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1. 12 선고 2017가단1984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불법건축물(비닐하우스)을 철거하고,
나. 위 가.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016. 10. 30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유기웅

별지